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6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조인철・박용갑・한정애

안도걸 • 문진석 • 양부남

민형배 · 전진숙 · 위성곤

이개호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관람권·이용권·할인권·교환권 등이나 철도·선박·항공기 등의 탑승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를 "제72조제 1항제2호·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44조의11(입장권등의 부정판매 |
| |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
|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
| |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 | <u>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u> |
| | ·관람권·이용권·할인권·교 |
| | <u>환권 등이나 철도·선박·항공</u> |
| | 기 등의 탑승권 등(이하"입장 |
| | 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입 |
| | 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 |
| | 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
| |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 |
| | 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
| |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 |
| | 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
| |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 |
| |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제74조(벌칙) ①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u> 3의2.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u> |

4. ~ 7. (생략)

② (생 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u>입상권등을 부성판매한 자</u> |
|-----------------------------|
| 4. ~ 7.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u> |
| <u>항제2호·제73조제7호 및 제74</u> |
| 조제1항제3호의2의 |
| |
| |
| |
| |
| |
| |
| |
| · |